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3270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10317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32701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박희준

피 고 1. B

2. C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2. 9.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7. 2. 14. 피고들의 권유로 D단체와 사이에 원고가 D단체의 집회와 관련하여 충남 천안시 E 소재 식당에 식사를 제공하고, 그 보증금으로 150,000,000원, 권리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식당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과 권리금을 D단체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F, G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D단체에게 지급할 보증금 및 권리금 중 각 40,000,000원을 식당 오픈이 정상화된 후 2개월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4) D단체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식당위탁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D단체를 상대로 위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D단체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권리금 중 각 40,000,000원의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기한 경과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D단체가 강원도 강릉 소재 H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추진하였고, 위 식당오픈이 정상화된 후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미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이 법원 2019가단37140, 이 법원 2019가단37119). 하지만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판결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D단체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와 같은 기존의 재판이 종결되고 나서 원고가 주채무자인 D단체에 위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 청구를 한 이후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증인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보증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피고들에게 불리하므로 위 법 제11조1)에 따라 무효이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위 법 제7조2)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으로 간주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내용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들과 F, G이 각 40,000,000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분명하므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서상 보증기한을 ‘식당 오픈이 정상화된 후 2개월까지’로 약정한 이상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제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